# 직 제 규 정

제36차 개정 2018. 4. 1. 제37차 개정 2018. 7. 1. 제38차 개정 2019. 3.25. 제39차 개정 2020. 1. 1. 제41차 개정 2021. 1. 1. 제42차 개정 2022. 1. 1. 제44차 개정 2023. 1. 1. 제44차 개정 2023. 1.30. 제45차 개정 2024. 1. 1. 제46차 개정 2024. 1. 1. 제47차 개정 2025. 1. 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8.12.29.>
- 제2조(적용범위)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제에 대해서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

# 제2장 구성원

- **제3조(사장 및 감사)**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4조(상임이사 등) ①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기획전략이사, 기반사업이사, 수자원관리이사, 농어촌 계획이사, 농지관리이사로 한다. <개정 2003.7.1., 2004.11.30., 2005.12.19., 2006.12.12., 2008.1.1., 2009.1.5., 2010.1.26., 2014.1.1., 2015.1.1., 2015.8.1., 2016.1.1., 2017.1.1., 2021.1.1., 2022.1.1., 2024.1.1.>
  - ② 사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부사장겸상임이사(이하 "부사장"이라 한다) 1명을 둘 수 있으며,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협조 또는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3.7.1., 2004.11.30., 2005.12.19., 2008.1.1., 2010.1.26., 2013.1.1.>
  - ③ 사장 부재 시에는 부사장,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사장을 대리하여 공사 대표기능 등을 수행한다. <신설 2003.7.1., 2004.11.30., 2008.1.1., 2009.1.5., 2010.1.26., 2013.1.1.>
  - ④ 상임이사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경영책임을 진다. <개정 2003.7.1., 2008.1.1., 2013.1.1.>

**제5조** 삭 제 <2024.1.1.>

**제6조** 삭 제 <2024.1.1.>

- **제7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사직, 전문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19., 2013.3.1., 2024.1.1.>
  - ② 일반직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하고, 직급은 1급·2급·3급·4급·5급으로 구분하며,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1.>
  - ③ 별정직은 비상계획관, 예비군지휘관 등 특수 업무 수행 직원으로 하며, 직급 구분은 일반직에 준한다. <개정 2002.2.1., 2005.12.19.>
  - ④ 기사직의 직급은 6급으로 하며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11.1.>
  - ⑤ 삭 제 <2013. 3. 1>

- ⑥ 전문직은 정책보좌관, 전문위원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일반직 직원으로 하고, 세부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3.1., 2017.1.1., 2024.1.1.> [제목개정 2024.1.1.]
- 제8조(고문 등) ① 공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전문직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7조에 따른 직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근로자 및 보조적 업무수행에 필요한임시근로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직 · 임시직 근로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

## 제3장 기구 및 분장업무

- **제9조(기구)** 공사는 본사,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지역본부, 안전진단본부, 사업단, 지사를 둔다. <개정 2002.1.1., 2006.12.12., 2008.1.1., 2009.1.5., 2009.5.29., 2011.12.30., 2014.1.1., 2014.7.1., 2018.4.1., 2019.3.25., 2022.1.1.>
- 제9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농지은행사업, 농지 현황 조사 및 정보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운영한다.<신설 2022.1.1.>
  - ② 농지은행관리원의 전문성 강화, 인사 및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1.>
- **제10조(본사)** ① 본사에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를 두고, 사장 직속 하에 비서실, 홍보실, 안전혁신실을, 감사 직속 하에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03.7.1., 2004.11.30., 2005.12.19., 2006.12.12., 2008.1.1., 2009.1.5., 2010.1.26., 2013.1.1., 2014.1.1., 2015.1.1., 2017.1.1., 2018.4.1., 2019.3.25., 2019.7.1., 2021.1.1., 2023.1.1., 2023.8.1., 2024.1.1.>
  - ② 본사에는 기획전략본부, 기반사업본부, 수자원관리본부, 농어촌계획본부 및 농지은행관리원을 둔다. <개정 2003.7.1., 2004.4.1., 2004.11.30., 2005.12.19., 2006.12.12., 2008.1.1., 2009.1.5., 2010.1.26., 2011.12.30., 2013.1.1., 2013.5.1., 2014.1., 2015.1.1., 2015.8.1., 2016.1.1., 2017.1.1., 2018.4.1., 2019.3.25., 2020.1.1., 2021.1.1., 2022.1.1., 2023.1.1., 2024.1.1., 2025.1.1.>
  - 1. 기획전략이사 소관으로 기획전략본부를 두고 기획조정실, 자산재무처, 디지털혁신처, ESG경영실, 비상계획실 업무를 관장한다.
  - 2. 기반사업이사 소관으로 기반사업본부를 두고 기반사업처, 기반계획처, 글로벌사업처, 스마트농업처, 공익보상처 업무를 관장한다.
  - 3. 수자원관리이사 소관으로 수자원관리본부를 두고 수자원관리처, 수자원시설처, 기전기술처, 환경관리처, 지하수지질처 업무를 관장한다.
  - 4. 농어촌계획이사 소관으로 농어촌계획본부를 두고 농촌공간계획처, 어촌수산처, 지역개발지원단 업무를 관장한다.
  - 5. 농지관리이사 소관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을 두고 농지은행처, 농지관리처, 기금관리처, 총무인사처 업무를 관장한다.
  - 6. 삭 제 <2017.1.1.>
  - 7. 삭 제 <2019.3.25.>
  - 8. 삭 제 <2019.3.25.>
  - ③ 삭 제 <2008.1.1.>
- **제11조(농어촌연구원)** 농어업·농어촌개발 등에 관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농어촌연구원을 둔다. <개정 2005.12.19., 2006.12.12., 2009.1.5.>
- 제11조의2(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및 연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06.12.12...

2008.1.1., 2009.1.5.>

**제11조의3(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도농교류 촉진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어촌자원개발원을 둔다. <신설 2009.1.5., 2009.5.29., 2011.12.30.>

**제11조의4** 삭 제 <2019.3.25.>

**제11조의5** 삭 제 <2019.3.25.>

**제12조(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다음의 부서를 두며, 지역본부별 관할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1., 2006.12.12., 2008.1.1., 2013.1.1., 2015.1.1., 2025.1.1.>

- 1. 경기지역본부
- 2. 강원지역본부
- 3. 충북지역본부
- 4. 충남지역본부
- 5. 전북지역본부
- 6. 전남지역본부
- 7. 경북지역본부
- 8. 경남지역본부
- 9. 제주지역본부

제12조의2(안전진단본부)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안전진단본부를 둔다. <신설 2022.1.1.>

**제13조(사업단)** 특정지역 및 특정업무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02.7.1., 2006.12.12., 2009.1.5., 2013.1.1., 2015.1.1., 2018.4.1., 2019.3.25., 2020.1.1., 2021.1.1., 2022.1.1., 2024.1.1., 2025.1.1.>

- 1. 화안사업단
- 2. 삭 제 <2024.1.1.>
- 3. 금강사업단
- 4. 새만금사업단
- 5. 영산강사업단
- 6.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7. 삭 제 <2018.4.1.>
- 8. 토지개발사업단
- 9. 삭 제 <2022.1.1.>
- 10. 충남서부관리단

**제13조의2** 삭 제 <2014.1.1.>

**제13조의3** 삭 제 <2014.7.1.>

제14조(지사) ① 지역본부 관할 하에 농어촌정비사업 및 용수관리와 농지은행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93개 지사를 두며, 지역본부별 운영 지사수는 별표 2의1과 같다. <개정 2002.1.1., 2006.12.12., 2008.1.1., 2010.12.16., 2016.7.1., 2018.7.1.>

② 지사별 설치장소 및 관할범위(시·군),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1.>

제15조(기구표) 공사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1.1., 2002.7.1., 2003.7.1., 2004.4.1., 2004.11.30., 2005.12.19., 2006.12.12., 2008.1.1., 2009.1.5., 2009.5.29., 2011.12.30., 2013.1.1., 2013.5.1., 2014.1.1., 2014.7.1., 2015.1.1., 2015.8.1., 2016.1.1., 2016.7.1., 2017.1.1., 2018.4.1., 2018.7.1., 2019.3.25., 2019.7.1., 2020.1.1., 2021.1.1., 2023.8.1., 2024.1.1., 2025.1.1.>

제16조(하부조직) ① 본사・농어촌연구원・인재개발원・농어촌자원개발원・지역본부・사업단의 하부

조직으로 실·처·소·단·센터 또는 지부, 부와 사업소·관리소·사무소·해외사무소·출장소 등의 현장사무소를, 지사의 하부조직으로 지부, 부·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1.1., 2004.11.30., 2006.12.12., 2008.1.1., 2009.1.5., 2009.5.29., 2011.12.30., 2014.1.1., 2014.7.1., 2016.7.1., 2018.4.1., 2019.3.25., 2024.1.1.>

② 제1항의 하부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의2** 삭 제 <2022.1.1.>

- **제17조(임시조직)** 한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팀 조직 등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8조(전문조직의 설치)** ① 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직제와는 별도로 농지제도 및 기술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직의 구성원은 외부충원이 가능하고 별도의 직급체계와 보수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 제19조(업무분장 등) 각 조직 단위의 직제순위와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7.1., 2001.1.1., 2001.7.1., 2002.1.1., 2002.7.1., 2003.7.1., 2004.4.1., 2004.11.30., 2005.12.19., 2006.12.12., 2008.1.1., 2009.1.5., 2009.5.29., 2010.12.16., 2011.12.30., 2013.1.1., 2013.5.1., 2014.1.1., 2014.7.1., 2014.8.1., 2015.1.1., 2015.8.1., 2016.1.1., 2017.1.1., 2018.4.1., 2019.3.25., 2019.7.1., 2020.1.1., 2021.1.1., 2023.1.1., 2023.8.1., 2024.1.1., 2025.1.1.>

# 제4장 직위 및 직무

- **제20조(직위)** ① 직원의 직급별 직위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7.1., 2002.1.1., 2004.11.30., 2005.12.19., 2006.12.12., 2008.1.1., 2013.1.1., 2014.1.1., 2015.1.1., 2016.1.1., 2016.7.1., 2017.1.1., 2018.4.1., 2022.1.1., 2024.1.1.>
  - 1. 1·2급: 본사 부서장, 본부장, 원장, 사업단장, 실장, 사업실장, 선임연구위원, 센터(소)장, 지사장, 팀장(단장), 지부장, 부장, 연구위원, 지소장, 관리소장, 사무(업)소장, 용역단장, 팀원
  - 2. 3급 : 차장, 전임교수, 수석연구원, 지소장, 관리소장, 사무(업)소장, 팀장(단장), 지부장, 부장, 센터(소)장, 용역단장, 팀원
  - 3. 4급: 과장, 대리, 전임강사,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소장, 팀원
  - 4. 5급 : 사원, 연구원, 팀원
  - ② 사장은 지역본부·사업단에 소속부서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실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7.1.>
  - ③ 삭 제 <2005.12.19.>
  - ④ 직위별 보직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권한과 책임) ① 사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하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직무대행)** 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제4조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7.1., 2004.11.30., 2005.12.19., 2008.1.1., 2009.1.5., 2010.1.26., 2013.1.1.>
  - ②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12.16.>
  - ③ 상임이사,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하위 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차하위 직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4.1.1.>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0.12.16., 2013.1.1.>

제23조(정원) ① 공사의 정원은 임원, 일반직, 별정직, 기사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며, 세부 내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7.1., 2001.1.1., 2001.11.1., 2002.1.1., 2002.2.1., 2004.11.30., 2006.12.12., 2009.1.5., 2009.5.29., 2010.12.16., 2012.2.1., 2013.1.1., 2015.1.1., 2016.1.1., 2017.1.1., 2018.4.1., 2022.1.1., 2023.1.30., 2024.1.1., 2025.1.1.>

- ② 사장은 총 정원 범위에서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③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2010.12.16., 2015.1.1., 2019.7.1.>
- ④ 삭 제 <2000.7.1.>

## 제5장 보 칙

**제24조(특명사항)** 이 규정에 따른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수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25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세칙으로 정한다.